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 번호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8106	진중오의원 등 10인	'25.2.12.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8.21.)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20.)
	2209156	조계원의원 등 12인	'25.3.20.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8.21.)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20.)
	2210464	강대식의원 등 12인	'25.5.9.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8.21.)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20.)
	2211444	임오경의원 등 10인	'25.7.11.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8.21.)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20.)
	2213948	김교홍의원 등 11인	'25.11.6.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5.11.17.)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20.)
	2214167	김교홍의원 등 11인	'25.11.12.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5.11.17.)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2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1. 28.)는 위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물의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면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는 불법복제물의 제작·유통,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의 운영, 불법 링크 제공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대체 사이트가 즉시 등장하는 등 침해 양상이 한층 교묘해지고 있음.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민사적 배상 체계와 적절한 형사적 제재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의 조사 기능 강화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율도 요구되고 있음. 특히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의 침해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보다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를 통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저작권 보호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민사·형사적 구제수단과 단속 체계를 보완하며, 온라인 침해에

대한 신속한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22조의6).

나.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행위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함(안 제124조).

다. 법원이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

라.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33조 등).

마.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3조의2, 제133조의3, 제133조의4 등).

바.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함(안 제136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0호가목 중 “제공하는 자”를 “제공하는 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의2 제목 중 “보호에 관한 시책”을 “보호 종합대책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책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의”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제2항제1호 중 “불법복제물”을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이하 “불법복제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122조의6제2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4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아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는 영리 목적의 행위
5.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제125조제1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은 저작권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권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제133조의 제목을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말한다)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이라 한다)은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무력화기기”라 한다)”로 하고, “할 수 있다”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3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정한”을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을 “삭제하거나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은 불법복제물 또는 무력화기기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중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를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명할 수 있다.

3.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제1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조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권고할 수 있다.

4.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제1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4(긴급차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 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접속차단 조치가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가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긴급차단 조치 해제가 확정된 경우 긴급차단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6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13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33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42조제2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2항·제4항 및 제133조의4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4까지 및 제14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작권 보호 시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저작권 보호 시책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책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
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의 삭제

의 수립 등) ① -----

-----사항
을 포함한 저작권 보호 종합대
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종합대책에 따라 저
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
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
합대책 및 추진계획의-----

-----.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

2. ~ 4. (생략)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u><신설></u> ⑦ (생략)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 3. (생략)	<u>는 복제물(이하 “불법복제물”이라 한다)-----</u> 2. ~ 4.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30명</u>----- -----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u>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	---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4.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아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는 영리 목적의 행위

5.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② (현행과 같음)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③ (생략)

<신설>

<신설>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액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
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
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
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자의 재산상태

④ (생 략)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등) ① -----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이라 한다)은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무력화기기”라 한다)-----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은 불법복제물 또는 무력화기기를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정하는-----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하거나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 2. (생략)

<신 설>

② ~ ⑧ (생략)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보호
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
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

⑦ ----- 제4항 -----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_____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 . 이 경우 제3호
의 조치는 제1호, 제2호의 조치
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
우에 한하여 명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

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 3. (생략)

<신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신설>

-----.

이 경우 제4호의 조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권고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②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3조의4(긴급차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
속을 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
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
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
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을 경
우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

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접속차단 조치가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가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긴급차단 조치 해제가 확정된 경우 긴급차단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6조(벌칙)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 (생략)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42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7조(벌칙)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133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현행과 같음)

제14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2. (생략) <u><신설></u> 4. 제13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생략) ③·④ (생략)	----- -----. 1. ~ 3의2. (현행과 같음) <u>3의3. 제133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4. -----제2항·제4항 및 제133조의4제1항 ----- -----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